

광주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47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470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합5165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김옥연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5. 27.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합5165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413,043,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3,04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2행의 “원고가”를 “C가”로 고치고, 8쪽 1행의 “목록” 위에 “[별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2021. 5. 17.자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임을 입증하기 위한 시가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시가 감정을 위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훈, 판사 성충용, 판사 위광하